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차주영 부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의 토대를 마련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시행
 - 2013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4년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주요한 건축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논의 진행 중

정책제안

- 내실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DB구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 계획' 수립
- 질 높은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품격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와 설계공모 방식의 다양화 추진 및 시공과정에서 설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매뉴얼과 대가기준 마련 필요
 - 기획단계 내실화를 위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 구체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건축진흥원 설치 필요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배경

■ 낙후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타 산업분야 발전의 촉매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잠재력이 큼
 - 44.6%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설업에 비해 건축서비스산업은 60.1%의 부가가치 창출하며, 27.0%의 고용을 창출하는 건설업에 비해 건축서비스산업은 41.8%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
 -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관련 타산업의 촉매역할을 수행하며 약 94.6%에 이르는 산업분야의 중간재로서 활용되는 효과가 있음
-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의 자산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대
- 국격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산업적 관점의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건축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정립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방안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준비모임 발족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실무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입법추진단 실무 TFT’를 구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처음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말 제19대 국회에 재상정하고,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
 -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산업육성 TFT’를 발족하여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실행방안을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2014년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관련 기준과 관련 타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임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건축서비스”¹⁾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시공 시 본 설계의도대로 구현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리행위와 유지관리 등의 행위를 포함함
 - “건축서비스산업”²⁾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을 의미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총칙,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보칙, 벌칙 등 총 7장으로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진흥법’의 입법특성에 따라 계획수립, 통계작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개발 지원, 사업 지원, 진흥원 설립,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
 - 여기에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주요 현안을 반영하여 발주방식의 다양화, 표준화 기반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의 내용이 추가됨
 - 또한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설계의도 구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전체 법률을 구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구성

장구분	법조문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라 “건축서비스”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함.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함.

장구분	법조문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5조 (창업지원)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 (출연금) 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 (보고 및 검사) 제30조 (비밀 업무의 의무)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보칙	제32조 (조세의 감면) 제33조 (자료제출)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②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③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⑥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⑦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⑧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 공공건축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됨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태조사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①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②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수주 및 매출, ③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④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실태, ⑤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됨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고용불안에 따른 전문인력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서비스전문인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학회, 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우수한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공모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그의 역량에 대한 포상을 제공하고, 신진건축사에 대한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경쟁심화와 대형설계업체 위주로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점차 활로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규모 설계업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건축물의 지정 및 지원**

- 우수 건축물 지정 및 지원제도는 건축가의 창작활동이 사회발전과 인간 생활환경 창조에 기여하는 노력 및 이와 협력한 건축주, 시공자들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건축서비스 산업 전반의 제작 의욕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문화발전에 공헌

하고자 마련된 것임

- 이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역을 찾아 격려하고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 우수한 건축물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건축품격제고를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그동안 건설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를 지식서비스로 정의하고, 가격이 우선 순위가 아닌 설계안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
- 특히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르도록 함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 발주방식별 영역현황

	설계공모	PQ+ 가격입찰	가격입찰 (PQ제외)	기술자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협상형	확인불가	계
건수	9 (1.13)	256 (32.24)	365 (46.00)	72 (9.07)	19 (2.40)	16 (2.4)	57 (7.2)	794
금액 (백만원)	15,795 (2.92)	327,861 (60.69)	50,172 (9.28)	31,804 (5.89)	93,139 (17.24)	6,289 (1.16)	15,145 (2.8)	540,206 (100)

출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3, 건축·도시분야 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평가제도 개선연구, p.44

• 설계의도 구현

-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자를 건축과정, 즉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감리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본 설계의도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설계자의 참여의 범위는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임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목적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규정 마련 필요
-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연계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 「건축사법」 등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관이 높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내실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상호 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을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활동기준과 또는 그 설정행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법령에서 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이외에 하위법령에서 기본계획의 명확한 목표설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시행 성과 진단을 위한 평가를 추가로 포함함
-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산업의 현황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흥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절차가 정형화되어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수주 및 매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그 밖의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질높은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 건축설계 발주에서 설계공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건설공사

와 동일한 개념에서 발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분야에 대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인식되는 전기를 마련함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함
- 설계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선정하기 위한 기존의 설계공모방식,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방식, 그리고 2단계에 걸쳐 시행할 수 있는 2단계 공모방식 등을 제안하여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모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중 예정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

• 새롭게 도입되는 설계공모제도 및 발주제도의 확산과 적용,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행 발주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각종양부처 및 조달청에서는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어 설계공모에 관한 운영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확대된 설계공모를 시행하는데 있어 경험이 없는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질 높은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유연한 운영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준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매뉴얼 및 대가기준 마련

- 설계의도 구현은 것은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설계 취지와 생각이 최종적인 건축물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설계의도 구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로는 하위법령에서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업무에 대해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의 업무로 규정하였음
 - 또한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준공도서 등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첨부하도록 함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에 관한 업무 매뉴얼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실제 적용단계에서는 법에 명시된 설계의도 구현 업무 항목의 해석에 대해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업무가 설계자의 업무인지, 감리자의 업무인지, 시공자의 업무인지 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속한 시간에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에 관한 업무 매뉴얼, 시공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대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할 수 있음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국가와 지역의 건축문화를 대표적인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설계의 기획업무를 내실화하는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적용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 따라서 하위법령에서는 설계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건축물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타법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함
 - 하위법령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연구원 등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의 확보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시행할 경우 연간 약 250여건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운영인력과 검토인력의 확보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총공사비	2011년 기준	검토제도		
[단위 : 억]				
1,000 ▾	13 건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재정지원 300억 이상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건축비 100억 이상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500 ▾	35 건			
200 ▾	103 건			
100 ▾	119 건			
50 ▾	257 건			우선적용
0 ▾	11,347 건			확대적용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전담기관인 건축진흥원의 설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 체계구축, 창업지원, 홍보 및 교육,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요 전담 기관으로 건축진흥원 지정 또는 설치에 대한 공감대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 건축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의 정량적 제시가 필요함
- 또한 건축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정부 부처 내의 이해관계 및 인접 산업 분야와의 경합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결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은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한 계기 마련

-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높은 잠재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낮은 형편임

-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건설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를 지식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우선 순위가 아닌 설계안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건축계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미약했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미진하였거나 입법전략상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안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중기적 관점에서는 법률의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과 추진계획 등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률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차주영 부연구위원 (031-478-9646, cytchah@auri.re.kr)

염철호 연구위원 (031-478-9677, chyoun@auri.re.kr)

심경미 부연구위원 (031-478-9654, kmisim@auri.re.kr)

